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9. 4. 23.(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9-18(서)-084~086)

-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주)씨제이이엔엠 등 3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씨제이이엔엠	「방송법」 제73조제4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호	375만원
(주)기독교텔레비전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1,500만원
(주)대교	「방송법」 제73조제4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호	1,500만원

나.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9-18(서)-087~090)

- 「방송법」 제74조제1항·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대구문화방송(주) 등 4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다음과 같이 각각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대구문화방송(주)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500만원
한국소비자티브이(주)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350만원
(주)에이온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350만원
(주)지엠티비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500만원